

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결정서 및 납부고지서(납부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6. 29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납부독촉장),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험료 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06. 29. ~ 2026. 07. 13. (15일간)
5.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성남지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성남지청 고용관리과(Tel 031-788-1584)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